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경산시 ② 구미시

조 **치 기 관** ① 경산시 ② 구미시

내 용

1. 업무 개요

경산시와 구미시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 등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하 "지방세 등"이라 한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¹¹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항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나 지방세외수입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2. 7. 27.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전국 재산정보를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제공하고 있다.

¹¹⁴⁾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으로 독촉, 재산압류·매각 및 청산의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짐

따라서 경산시와 구미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근저당권부 채권

115) 등 체납자의 전국 재산정보를 확인한 후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압류(체 납처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경산시와 구미시의 지방세 등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근저당권부 채권 등 재산자료를 활용하여 체납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경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75,000,000원을 2018. 1. 2.부터체납한 AS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채권에 대해 압류(체납처분)하지 않는 등 경산시와 구미시는 [별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근저당권부 채권 등 미압류 명세"와 같이 계 191,023,720원(116건)을 체납한 13명의 근저당권부 채권 등(근저당권 등¹¹⁶⁾ 설정금액계 1,384,000,000원)을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경산시와 구미시는 [별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근저당권부 채권 등 미압류 명세"와 같이 BI 등 4명의 근저당권 등이 해지되어 체납세액 계 31,273,320원(79건, 근저당권 등 설정금액 계 589,000,000원)이 일실될 우려가 있고, AS 등 9명의 체납세액 계 159,750,400원(37건, 근저당권 등 설정금액 계

¹¹⁵⁾ 체납자가 제3자의 부동산 등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상의 권리

¹¹⁶⁾ 근저당권, 전세권 등

795,000,000원)은 체납자가 근저당권 등을 해지할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등체납처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경산시와 구미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근저당권부 채권 등을 파악, 확보하는 등 체납처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과 구미시장은

- ① [별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근저당권부 채권 등 미압류 명세"에 기재된지방세 등 체납자 13명 중 근저당권 등이 해지되지 않은 AS 등 9명(체납세액 계 159,750,400원)에 대해「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항 및 제107조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재산(근저당권부 채권등)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고
- ②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근저당권부 채권 등을 압류하지 않는 등으로 체납세액이 일실되거나 체납처분을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근저당권부 채권 등 미압류 명세

(단위: 원)

연번	기관명	체납자	체납자주소	체납세목명	부과일(건수)	체납일	체납세액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일	근저당권 등 설정금액	근저당권등 설정해지일
1	경산시	AS	경상북도 경산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 관한특별조 치법, 위반이행강제금	2015.2.3.	2018. 1. 2.	75,000,000	2011.5.3.	200,000,000 (근저당권)	
2	경산시	-	경상북도 경산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6.1.5.(2건)	2016. 2. 1.(2건)	16,972,550	2013.9.2.	5,000,000 (저당권)	
	경산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하천시용료	2016. 3.10.~ 2018. 3. 15.(3건)	2016. 4.1.~ 2018. 3.31.(37 <u>4</u>)	753,870	2016.1.11.	10,000,000 (근저당권)	
3				지동치손해배상보장 법」위반과태료	2008. 12.5.(2건)	2009. 1. 2(2 2 l)	1,463,400			
				계	5건		2,217,270			
4	경산시	-	경상북도 경산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위 반괴징금	2017.5.8.	2017. 8. 9.	25,687,760	2016.2.11.	400,000,000 (근저당권)	
5	경산시	_	대구광역시 달서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과징금	2015. 4. 20.	2015. 7. 21.	14,000,000	2012.4.9.	100,000,000 (근저당권)	2016.8.29.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재산세(주택)	2017. 7. 10.	2017. 8. 1.	118,360	2014. 10. 29.	50,000,000 (전세권)	
				자동차세 (자동차)	2017. 6. 10., 2017. 12. 10.	2017. 7.1., 2018. 1. 1.	559,330			
6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7.9.10.	2017. 10. 1.	436,830			
				계	4건		1,114,520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취득세(차량)	2016. 6. 10.	2016. 7. 1.	61,310	- 2015. 12. 17.	40,000,000 (전세권)	
7				주민세 (개인균등)	2016. 8. 10., 2017. 8. 10.	2016. 9.1., 2017. 9. 1.	22,660			
7				자동차세 (자동차)	2009. 12. 10.~ 2017. 12.10.(13 <u>7</u> 4)	2010. 1.1.~ 2018. 1.1.(13건)	1,751,950			
				계	16건		1,835,920			
8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주민세 (종합소득)	2005. 11.10.	2005. 12. 1.	2,432,210	2012.11.12.	20,000,000 (전세권)	
9	구미시	(쥐 건설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독외광고물등의 관리 와 독외광고산업진흥 에 관한법률」위반 과태료	2017. 8. 7.~ 2017. 9. 20.(6건)	2017.8.23.~ 2017.10.25(67 <u>4</u>)	31,436,400	2015. 4.15.~ 2016. 2.3.(3건)	60,000,000 (전세권)	

연번	기관명	체납자	체납지주소	체납세목명	부과일(건수)	체납일	체납세액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일	근저당권 등 설정금액	근저당권등 설정해지일
10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공유수면점용료	2017. 8. 22.	2017. 9. 22.	3,053,770	2016. 12. 14.	10,000,000 (근저당권)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주민세 (개인사업)	2015. 8.10.~ 2017. 8. 10.(3건)	2015. 9.1.~ 2017. 9. 1.(3 <u>7</u> 1)	169,950	2016. 2. 22.	50,000,000 (전세권)	2017.11.24.
				재산세(주택)	2015. 7. 10.	2015.8.1.	2,430			
11				자동차세 (자동차)	2015. 6.10.~ 2017. 6. 10.(5건)	2015. 7.1.~ 2017. 7. 1.(5 <u>7</u> ±)	1,049,070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014. 1.10.~ 2017. 9. 10.(4건)	2014.11.1.~ 2017.10.1.(4건)	10,679,3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015. 4.10.~ 2017.11.10.(4건)	2015. 5.1.~ 2017. 12.1.(4건)	37,650			
				계	17건		11,938,410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구)취득세 (부동산)	2002. 2. 10.	2002. 3. 1.	1,397,300	2014. 2. 19.	45,000,000 (전세권)	2016.5.11.
				구)취득세 (치량)	2002. 4. 10.	2002. 5. 1.	112,510			
				주민세 (개인균등)	2002. 8. 10.~ 2015. 8. 10.(147 <u>1</u>)	2002. 9.3.~ 2015. 9.1.(14건)	71,660			
12				주민세 (개인사업)	2013. 8.10.~ 2015. 8. 10.(3건)	2013. 9.1.~ 2015. 9. 1.(3 <u>7</u> 4)	169,950			
				구)재산세 (건축물)	2002. 7.10.~ 2004. 7. 10.(3건)	2002. 8.1.~ 2004. 8. 3.(3 <u>74</u>)	236,250			
				자동차세 (자동차)	2002. 6.10.~ 2014. 6. 10.(27건)	2002. 7.1.~ 2014. 7.1.(27건)	1,273,900			
				종합토지세	2002.10.10.~ 2004.10.10.(3건)	2002.11.1.~ 2004.11.1.(3건)	58,030			
				계	52건		3,319,600			
	구미시	(Ŷ)	경상북도 구미시 ·	주민세 (법인균등)	2014. 8. 10.	2014. 9. 1.	56,650	2013. 12. 16.	394,000,000 (근저당권)	2016.8.25.
13				자동차세 (자동차)	2014. 6.10.~ 2016. 6. 10.(7건)	2014. 7.1.~ 2016. 7. 1.(7건)	1,938,940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2015. 6. 10.	2015. 7. 1.	19,720			
				계	9건		2,015,310			
합계				11621		191,023,720		1,384,000,0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